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12. 11 선고 2018가단70700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청구]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씨,담당변호사 서경배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학

변론 종결 2019. 7. 17

판결 선고 2019. 12.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2014 . 8. 22.
접수 제52060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소 2012. 2. 8. 접수 제7057호로마친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12. 2.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2. 2. 8. 접수 제7057호로 근저당권자 원고,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27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4. 8. 22.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1,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남편인 C 은 2012 . 1. 9. 140, 000, 000, 2012 . 1. 30. 130, 000, 000원
합계270,000,000원을 D에게 변제기를 2012. 12.말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위 대여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4 . 8. 22. D로부터 *2014 . 8. 30.까지 파주시 E 소재 부동산에 후순위 근저당권설정을
해주기로 약속하고 그러한 조건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한다'는 내용의 각서(갑7)를
교부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말소하였으나,D는 위와 같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D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처분권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피고의 대리인 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인에 해당한다.

원고는 D의 위와 같은 기망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한 것이므로,이사건 소장의
송달을 통하여 2014. 8. 22.자 해지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있다.

나. 판단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D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처분권이 있다거나 이 사건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D가 피고로부터 어떠한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정영훈

별지